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화 재 예 방 , 소 방 시 설 설 치 · 유 지 및
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국민은 공동주택에서 62.9%(단독주택 30.4%, 아파트 51.5%, 연립·다세대주택 11.4%)가 살고 있고,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에서 11.4%(289,574개동)가 살고 있으나 화재는 공동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공간(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합계	14,978	1,477	181	1,267	4,855	453	59	394

2) 이에, 연립·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16. ~ 2022. 1. 26.)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8호자목을 삭제한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부터 7)까지를 각각 2)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5 제2호라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소방시설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7522